
2025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
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과제제안요구서(RFP)
- 치매극복 글로벌 공동연구 -

목 차

| | |
|--|---|
| 0. [참고] 2025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국제 공동연구 RFP 공통 적용사항 | 3 |
| 3. 치매극복 글로벌 공동연구 | 5 |
| 1. (RFP 3-1) 치매극복 기반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| 5 |
| 2. (RFP 3-2) 글로벌 치매 예방·치료기술개발 | 8 |

□ **치매 기준**

- 치매는 사람의 정신(지적)능력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실을 말하며, 어떤 사람의 일상 생활의 장애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 치매라고 정의함, 원인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, 혈관성 치매, 파킨슨병, 루이소체 치매, 헌팅톤병, 크루츠펠트-제이아콘병, 픽병 등이 포함되고, 경도인지장애, 치매의 다른 원인들과 치매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질환들 (조발성치매, 전두엽치매, 알콜성치매), 기타치매 (유전성, 대사성, 염증성, 외상성, 가성치매 등) 등이 속함 (출처: 대한치매학회)

□ **연구개발과제 제안서 작성 시 필수확인 사항**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---|--|
| 과제구성 공통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공동/위탁연구개발과제를 구성 가능하며,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·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과제 구성 불가 • 주관연구개발기관: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• 공동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• 위탁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|
| 논문성과 관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책임급 연구원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 ○ 국제공동 논문의 경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소 1건 이상의 논문 성과는 국내 연구책임자(혹은 책임급 참여연구원)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, 상대국가의 연구책임자는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, 교신저자로 동시에 포함되어야 함 - Review(종설) 논문의 경우,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에 근거하여 SCI(E) 상위 10% 이상 논문에 국내 연구책임자(혹은 책임급 참여연구원)와 상대국 연구책임자가 모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포함된 경우만 성과로 인정 ○ 최종평가 시 연구내용과 관련 없는 성과는 성과로 인정하지 않음 ○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, 성과실적 계산을 위한 학문(질환) 영역별 journal 분류기준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전년도 기준의 IF 및 JCR을 활용 ○ 2개 이상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성과가 발생하는 경우, 병렬 사사표기가 가능하며 성과 입력 시 각 과제가 논문에 기여한 기여율의 합이 100이 되도록 기여율 기입 필요 ○ 입력된 성과의 기여율을 반영하여 성과로 인정하며 기여율의 합이 100이 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는 경우 1/N으로 적용됨 ○ 논문 발표 시,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의 성과임을 아래와 같이 사사표기 하여야만 성과로 인정함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* 국문 표기: (국문) “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(Korea Dementia Research Center, KDRC)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(과제 번호(예시): RS-2025-12345678)”</p> <p>* 영문 표기: “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Dementia Research Project through the Korea Dementia Research Center(KDRC),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& Welfare and Ministry of Science and ICT, Republic of Korea (grant number: RS-2025-12345678)”</p> <p>※ 위의 과제번호는 예시로, 반드시 해당과제의 과제번호 확인 후 사사 필요</p> </div> |
| 마일스톤 관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연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으로 이후 최종 평가 결정을 하기 위한 핵심자료임. 지원기간 이내에 달성이 가능한 마일스톤 제시 필수 |

| | |
|--|---|
| <p>기초·임상연구 레지스트리 (TRR) 이용 및 기탁 관련 사항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수집한 혈액·체액 샘플 및 환자 정보는 기초·임상 연구 레지스트리(TRR)의 운영계획에 따라 연차별 연구기간 내에 등록 및 기탁해야 함. 또한, 등록 기탁된 데이터 및 자료는 향후 치매관련 통합정보 및 서비스 플랫폼인 K-Dementia 빅데이터 허브 구축 등에 연계 예정이므로 선정된 과제는 관련 내용을 연구계획서 내에 명시하여 IRB 승인을 득해야 함 ○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료, 데이터 등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에서 구축한 TRR-DPK 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양이 가능함. 단, 분양심의를 통과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자체 시료/데이터 확보계획을 세우고, TRR 시료는 검증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 ※ 연구자가 신청한 정보 및 자원에 대해 분양심의를 거쳐 제공 예정 |
| <p>인허가 및 임상시험 관련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외 인허가 신청시 해당국가 및 규제기관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함 ○ 임상시험을 실시할 과제의 경우, 해당국가 규제기관(예,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, 미국 FDA) 으로부터의 임상시험계획(IND) 승인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(임상시험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)를 제출하여야 함 |
| <p>기타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신청 마감일까지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사전선별 시 탈락됨 ○ 외부기술을 도입한 경우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계획서에 첨부해야 함 ○ 국제공동연구인 경우 국내 주관연구기관이 글로벌 상업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권리를 확보해야 함 ○ 국문이나 영문 이외의 자료는 공인된 기관의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 ○ 과제 선정 후 연구책임자는 연구 네트워크 구축,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위해 사업단 주도의 프로그램 (워크숍, 정기세미나, 성과공유회, 간담회 등)에 참여해야 함 ○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수한 실용화 성과가 창출될 경우, 중앙·광역치매센터,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에 공유할 수 있음 ○ 일반적인 평가 관련 사항은 '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' 참고 ○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, '보건의료 R&D 성과관리 매뉴얼'에 따라 성과 검증을 진행함 |

RFP 3-1 치매극복 기반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
| | 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사업명 |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| | 사업유형 해당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도전형 R&D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부처 협업 패키지 R&D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 대상 | |
| 제안요청서명 | 치매극복 기반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| | | | |
| 공모유형 | 품목지정형 (Middle-up) | TRL* 단계 (시작~종료) <small>* TRL 단계 공모안내서 참고</small> | 의료기기 TRL 6 ~ 8 | 기술료 납부대상 | ○ |

▶ 사업목적

- 글로벌 선도 그룹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치매 조기 예측 및 진단기술 실용화(첨단기술 등)

▶ 지원대상

- 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
- 기업이 연구개발기관(주관 또는 공동)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(미참여시 평가대상 과제에서 제외)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▶ 지원규모

| 지원분야 | 지원기간 | 연간 연구개발비 (1차년도) | 선정 예정 과제수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치매극복 기반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| 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 | 328백만원 이내/년 (246백만원) | 1개 |

※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이내, 연구개발비는 9개월 이내 기준으로 지급

※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연간 연구개발비 변동 가능

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

| 지원분야 | 성과목표 | 연구내용(예시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치매극복 기반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| ① 논문 1편과 실용화·사업화 1건 이상을 포함한 성과실적 누적 <u>7점 이상</u> ※ 성과실적 계산 기준은 특기사항 참조 | ○ 치매 예측·조기진단 실용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 |

※ 상기 성과목표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시된 성과목표 이외 성과목표 추가 가능

※ 본 RFP에 지원할 경우, TRL 7 이상의 연구개발 수행 권고

▶ 특기사항

① 일반사항

-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3책5공)에 해당함

② 성과관련

- 아래 성과실적 계산기준 표를 참고하여, 과제종료 시까지 논문 1편과 실용화·사업화 1건 이상을 포함한 성과실적 누적 7점 이상 달성 필수
- ※ 교류 성과는 최대 3점으로 제한하며, 논문, 특허, 실용화·사업화 성과는 동일 항목의 성과를 여러 건 창출하는 것도 가능

< 성과실적 계산 기준 >

| 구분 | 성과항목 | 점수 | 구분 | 성과항목 | 점수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논문 | SCI(E) 논문 | 1점 | 실용화 · 사업화 | GMP 환경에서의 시제품 제작 | 3점 |
| | SCI(E) 상위 10% 이내의 경우 | 2점 | | IDE 승인 |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|
| 특허 | 국내·국외 출원 | 0.5점 | | | |
| | 국내 등록 | 2점 | | 개발 기술 매출 발생 | 6점 |
| | 국외 등록 | 3점 | | | |
| 교류 | 국제 공동 컨퍼런스 개최 | 1점 | | | |
| | 인력 교류 | 1점 | | | |

-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책임급 연구원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
- 국제공동 논문의 경우,
 - 최소 1건 이상의 논문 성과는 국내 연구책임자(혹은 책임급 참여연구원)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, 상대국가의 연구책임자는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, 교신저자로 동시에 포함되어야 함
 - Review(중실) 논문의 경우,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에 근거하여 SCI(E) 상위 10% 이상 논문에 국내 연구책임자(혹은 책임급 참여연구원)와 상대국 연구책임자가 모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포함된 경우만 성과로 인정
- 논문, 특허성과에 해당 사업의 사사 표기 필수
- 인력교류는 과제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1개월 이상 체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- 국제 공동 컨퍼런스는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상대국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연구 회의로서 단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는 성과인정이 불가하며, 전일 이상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포스터, 프로그램 안내서 등 증빙 제출 필요
- 임상시험결과보고서의 경우, 규제당국의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만 인정
- 성과는 과제 최종보고서에 제출된 성과까지 인정(증빙포함)

③ 해외연구개발기관 관련

- 해외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, 2개 이상 복수 기관 참여 가능
- 해외 연구책임자는 해당 국가의 인가를 받은 산학연병 소속 연구자여야 하며, 국내 소재 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
- 해외연구개발기관이 지원 기업과 자회사 등의 관계인 경우는 불가
- 해외연구개발기관이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 및 우수한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(특허, 품목허가, 기술수출, 매출액, 협력네트워크/활동 등 구체적 기술)
- 해외 비임상·임상시험을 위한 CRO 등 단순 용역기관은 해외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하며, CRO 비용 또한 본 과제 연구개발비용으로 계상 불가(본 RFP는 국제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, RFP 취지에 맞는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지향함)
- 해외연구개발기관 파트너(상대국 연구책임자)
 - 본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기관과 세부적으로 논의할 해외연구기관 소속 책임자로, 파트너의 전문성 및 연구개발역량에 대해 작성
- 해외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활동
 - 주관연구개발기관(또는 주관연구책임자)과 해외연구개발기관 간 현재까지 추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경우 함께 제시할 것(인력교류, 세미나, 기술미팅, 공동학회발표 등)
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국내외 기관 간 공동연구 역할분담 계획, 기관 간 연구성과 분배방안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제시
 -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, 협업 예정인 해외연구개발기관 및 해당 기관 연구책임자가 명시되어있고, 해외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에 대한 기여 부분(현금/현물 등), 해외협력기관과의 구체적인 기술협력, 역할분담 등이 반영된 공동연구 수행 증빙자료(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담계획이 기재되어있고, 이를 양측 연구책임자가 이해하고 있다는 서명이 포함된 LoI) 제출
 - 가능한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마일스톤(milestone, 정량지표) 제시

- 기존 국제협력(교류협력, 공동연구 등)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경우,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사업과의 성과 연계·확대 방안 제시
- ※ 과제가 선정될 경우, 국제공동연구 결과로 창출된 성과 등의 소유권·사용권·기술료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연구 개시 이후 3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(국내 연구개발기관장 및 해외 연구개발기관장 서명 날인 필수)

▶ 선정평가 기준

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적용가점 | 공고안내서 [붙임 4] 가감점 부여기준' 참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| 구분 | 평가항목(배점) | |
|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서면· 발표 평가 | 1.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총실성 (2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 목표/추진 방법의 적절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 추진 전략, 절차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한가? -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가? ○ 수행계획의 총실성 및 연구 목표 실현 가능성 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 수행계획이 구체적이며 총실한가? - 제시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며 타당하고,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? |
| | 2.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(2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 연구자(팀)의 연구개발역량 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참여연구진은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유관 연구 수행경험 및 성과(논문, 기술이전, 사업화 실적 등)를 보유하고 있는가? ○ 국외 연구자(팀)의 연구개발역량 및 기여도 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외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는가? - 협력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, 국외 연구자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는가? |
| | 3.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·협력 가능성 (4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연구개발이 국제 공동연구로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가? - 국외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보유한 선도 기술·역량을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가? ○ 공동연구 수행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·외 참여 기관 간 협력 분담이 적절하게 나뉘어 있는가? ○ 국내-국외 연구기관 간 협력기반 구축 여부 및 공동연구 수행의지 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외 연구책임자 간 해당 연구 수행을 위해 충분한 사전적 협의 절차를 거쳤는가? - 국외 연구기관이 연구비, 인프라 등을 충분히 제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? |
| | 4. 연구개발과제의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(2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외 연구책임자 간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 결과를 제시하였는가? ○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(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연구 기술 및 학술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? - 국내외 연구자 간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? |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

RFP 3-2 글로벌 치매 예방·치료기술개발

| | 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|---|
| 사업명 | 치매 극복연구개발사업 | 사업유형 해당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도전형 R&D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부처 협업 패키지 R&D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 대상 | | |
| 제안요청서명 | 글로벌 치매 예방·치료기술개발 | | | | |
| 공모유형 | 품목지정형 (Middle-up) | TRL* 단계 (시작~종료) * TRL 단계 공모안내서 참고 | 의약품 TRL 5 ~ 6 | 기술료 납부대상 | ○ |

▶ 사업목적

- 국제적 협력연구를 통한 글로벌 치매 치료기술 개발

▶ 지원대상

- 산·학·연·병 모두 가능
- 기업이 연구개발기관(주관 또는 공동)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(미참여시 평가대상 과제에서 제외)
-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'신청요건' 부분 참고

▶ 지원규모

| 지원분야 | 지원기간 | 연간 연구개발비 (1차년도) | 선정 예정 과제수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글로벌 치매 예방·치료기술개발 | 3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 | 609.2백만원 이내/년 (456.9백만원) | 1개 |

※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 이내, 연구개발비는 9개월 이내 기준으로 지급

※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연간 연구개발비 변동 가능

▶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

| 지원분야 | 성과목표 | 연구내용(예시)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글로벌 치매 예방·치료기술 개발 | ① 논문 1편과 실용화·사업화 1건 이상을 포함한 성과실적 누적 <u>9점 이상</u> ※ 성과실적 계산 기준은 특기사항 참조 | ○ 비임상 이상의 치매 치료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 - 비임상 단계의 연구개발 진행이 가능한 후보 물질의 임상시험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는 연구 ※ 물질에 대한 시험성적서 보유 필수 |

※ 상기 성과목표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시된 성과목표 이외 성과목표 추가 가능

▶ 특기사항

① 일반사항

-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3책5공)에 해당함

② 성과관련

- 아래 성과실적 계산기준 표를 참고하여, 과제종료 시까지 논문 1편과 실용화·사업화 1건 이상을 포함한 성과실적 누적 9점 이상 달성 필수
- ※ 교류 성과는 최대 3점으로 제한하며, 실용화·사업화 성과는 항목당 1회로 제한(GLP 시험 완료, Pre-IND 미팅 완료, 임상1상 IND 승인은 각 1회만 인정)

< 성과실적 계산 기준 >

| 구분 | 성과항목 | 점수 | 구분 | 성과항목 | 점수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논문 | SCI(E) 논문 | 1점 | 실용화 · 사업화 | 임상 단계 진입에 필요한 GLP 시험 완료 | 3점 |
| | SCI(E) 상위 10% 이내의 경우 | 2점 | | 주요 규제기관 Pre-IND 미팅 완료 | 4점 |
| 교류 | 국제 공동 컨퍼런스 개최 | 1점 | | 임상 1상 IND 승인 | 8점 |
| | 인력 교류 | 1점 | | | |

-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책임급 연구원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
- 국제공동 논문의 경우,
 - 최소 1건 이상의 논문 성과는 국내 연구책임자(혹은 책임급 참여연구원)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, 상대국가의 연구책임자는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, 교신저자로 동시에 포함되어야 함
 - Review(종설) 논문의 경우,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에 근거하여 SCI(E) 상위 10% 이상 논문에 국내 연구책임자(혹은 책임급 참여연구원)와 상대국 연구책임자가 모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포함된 경우만 성과로 인정
- 논문 성과에 해당 사업의 사사 표기 필수
- 인력교류는 과제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1개월 이상 체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- 국제 공동 컨퍼런스는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상대국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연구 회의로서 단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는 성과인정이 불가하며, 전일 이상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포스터, 프로그램 안내서 등 증빙 제출 필요
- 실용화·사업화 성과는 GLP 시험 결과보고서, Pre-IND 미팅 결과보고서, IND 승인서 등 적격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(본 RFP에 지원한 물질과 관련된 내용임을 필수적으로 증빙해야 함)
- 성과는 과제 최종보고서에 제출된 성과까지 인정(증빙포함)

③ 해외연구개발기관 관련

- 해외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, 2개 이상 복수 기관 참여 가능
 - 해외 연구책임자는 해당 국가의 인가를 받은 산학연병 소속 연구자여야 하며, 국내 소재 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
 - 해외연구개발기관이 지원 기업과 자회사 등의 관계인 경우는 불가
 - 해외연구개발기관이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 및 우수한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(특허, 품목허가, 기술수출, 매출액, 협력네트워크/활동 등 구체적 기술)
 - 해외 비임상·임상시험을 위한 CRO 등 단순 용역기관은 해외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하며, CRO 비용 또한 본 과제 연구개발비용으로 계상 불가(본 RFP는 국제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, RFP 취지에 맞는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지향함)
- 해외연구개발기관 파트너(상대국 연구책임자)
 - 본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기관과 세부적으로 논의할 해외연구기관 소속 책임자로, 파트너의 전문성 및 연구개발역량에 대해 작성
- 해외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활동
 - 주관연구개발기관(또는 주관연구책임자)과 해외연구개발기관 간 현재까지 추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경우 함께 제시할 것(인력교류, 세미나, 기술미팅, 공동학회발표 등)
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국내외 기관 간 공동연구 역할분담 계획, 기관 간 연구성과 분배방안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제시
 -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, 협업 예정인 해외연구개발기관 및 해당 기관 연구책임자가 명시되어있고, 해외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에 대한 기여 부분(현금/현물 등), 해외협력기관과의 구체적인 기술협력, 역할분담 등이 반영된 공동연구 수행 증빙자료(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담계획이 기재되어있고, 이를 양측 연구책임자가 이해하고 있다는 서명이 포함된 LoI) 제출
 - 가능한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마일스톤(milestone, 정량지표) 제시
 - 기존 국제협력(교류협력, 공동연구 등)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경우,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사업과의 성과 연계·확대 방안 제시

※ 과제가 선정될 경우, 국제공동연구 결과로 창출된 성과 등의 소유권·사용권·기술료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연구 개시 이후 3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(국내 연구개발기관장 및 해외 연구개발기관장 서명 날인 필수)

▶ 선정평가 기준

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적용가점 | 공고안내서 [붙임 4] 가감점 부여기준' 참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| 구분 | 평가항목(배점) | |
|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서면· 발표 평가 | 1.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(2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 목표/추진 방법의 적절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 추진 전략, 절차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한가? -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가? ○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연구 목표 실현 가능성 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 수행계획이 구체적이며 충실한가? - 제시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며 타당하고,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? |
| | 2.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(2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 연구자(팀)의 연구개발역량 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참여연구진은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유관 연구 수행경험 및 성과(논문, 기술이전, 사업화 실적 등)를 보유하고 있는가? ○ 국외 연구자(팀)의 연구개발역량 및 기여도 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외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는가? - 협력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, 국외 연구자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는가? |
| | 3.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·협력 가능성 (4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연구개발이 국제 공동연구로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가? - 국외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보유한 선도 기술·역량을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가? ○ 공동연구 수행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(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·외 참여 기관 간 협력 분담이 적절하게 나뉘어 있는가? ○ 국내-국외 연구기관 간 협력기반 구축 여부 및 공동연구 수행의지 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외 연구책임자 간 해당 연구 수행을 위해 충분한 사전적 협의 절차를 거쳤는가? - 국외 연구기관이 연구비, 인프라 등을 충분히 제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? |
| | 4. 연구개발과제의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(2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(1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외 연구책임자 간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 결과를 제시하였는가? ○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(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연구 기술 및 학술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? - 국내외 연구자 간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? |

※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(배점)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